

※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은 단순 참고용이며,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일반공급 청약일정 및 장소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방법	장소
1순위	2021. 06. 09(수)	인터넷 청약 (08:00~17:3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청약홈)
2순위	2021. 06. 10(목)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기간
일 정	2021. 06. 16(수)	2021. 06. 16(수) ~ 2021. 06. 23(수)	2021. 06. 28(월) ~ 2021. 07. 02(금)
방 법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	방문접수 (09:30~16:00) ※ 상세 일정 별도 공지	09:30~16:00
장 소	한국부동산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홈' www.applyhome.co.kr	당사 견본주택 (거제시 상동동 202-1번지)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청약신청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거제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 거주자 보다 우선합니다.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해당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p>[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 주택규모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신청 가능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별, 동별, 호별 등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접수불가)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자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신청한 가점접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한 가점접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점수와 비교하여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거주구분	순 위	신청자격
민영주택	당해 (거제시 거주자) / 기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배점기준표 (일반공급)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유주택자 및 만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주택자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및 단독세대)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직계존·비속),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만 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 인정 산정 시 추가 확인 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2) 만 30세 이상: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비고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 받아 다른 주택의 당점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한다.					